

KT복지제도 현황

(2012년 2월 현재)

- 복지기금 지급내역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상호부조제도

※ 기타 복지 항목

- 청원휴가 대상일수
- 병가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 연차휴가 산정 기준
- 국내 이전비 지급내역
- 통신비 지원
- 급식통근보조비 지급
- 긴급출동보전비 지급
- 리프레시 휴직제도
- 창업지원 휴직제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수련관 이용
- 선택근무시간제
- 상조서비스와 장제용품 지원

KT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제도



복지기금 지급내역

구 분 및 대 상				지급액	비고
경 조 금	축의금	결혼	본인 결혼	50만원	
			자녀 결혼	30만원	
		회갑/칠순 (택일)	직계존속(외가제외), 배우자 부모(회갑 만60세, 칠순 만69세)	30만원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민등록신고전 사망시 인정 , 쌍둥이 출산시 1회 인정
	조위금	단체보험	본인 및 배우자 재해 사망	10,0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재해 장해	2,5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암진단	1,500만원	
			본인 교통사망	5,000만원	
		복지기금	본인 및 배우자 일반 사망 (본인 자살 포함)	10,000만원	
			배우자 자살	200만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본인(배우자)의 자녀출산 중 자녀사망 또는 임신 8개월 유산 시에도 인정	50만원	
재 난 구	주택파손 (자가)	완전 파손		1,000만원	
		1/2 이상 파손		700만원	

호 금		1/3 이상 파손	350만원	
	주택파손 (전세)	완전 파손	200만원	
		1/2 이상 파손	150만원	
		1/3 이상 파손	100만원	
	주택침수 (본인거주)	완전 침수	300만원	
		부분 침수	200만원	
주택자금 대부		주택마련자금 융자 (이자율2%)	5,000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 융자 (이자율2%)	3,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부		긴급가계자금 (이자율2%)	2,000만원 한도	
의료비		교통사고, 입원의료, 입원일당 등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의료비 적용		
상조지원		매월 회사 12,500원 지원, 본인 12,500원 급여 공제(1인당 300만원 상당 상조상품 가입 시 불입금액 50% 지원) (예) 300만원 = 150만원(회사)+150만원(본인) 단, 중도해지 및 퇴사 시 지원불가 ※ 신입사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희망자에 한해 회사에서 매월 12,500원씩 10년간 지급	

※ 반환 회수 및 수혜 제한사항

허위, 부당하게 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위반 시 2배 변상)

※ 축의금(경조금), 유아/초등/중등(교육보조비) 및 중/고/대학교(학자금)은 KT/KTF 기존 기준 적용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1 정의

- 복지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시대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 니즈 충족
- 이원화 된 복지제도 통합 및 개인별 복지 내역을 포인트로 이해 쉽게 계량화
- 복지제도 간소화로 사원만족도 향상 및 경영효율성 제고

2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복지제도	개선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	• 부여 포인트를 복지카드를 통해 원하는 사용처에서 사용	• 좌동
건강검진	• 연령대 별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검진 실시	• 장년기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통해 노령화에 대비한 건강 관리 배려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제외 또는 보장금액 제한적	• 비급여 항목 보장 • 보장금액 인상
단체보험	•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동일 조건 일괄 가입	• '13 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연금저축	• 연간 60 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지원	• 지원대상 추가(지원 금액 동일) - 구)ktf 직원
교육비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현금 지급 - 유아, 초/중/고등, 대학 학자금	• 종전과 동일하나 포인트로 지급 * 중/고등/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 지급
상조지원	• 연간 15 만원 한도로 지원	• 좌동
인재육성	-	• 입사 10 년차 이내이면서 만 40 세 미만인 사원에게 30 만 P 지급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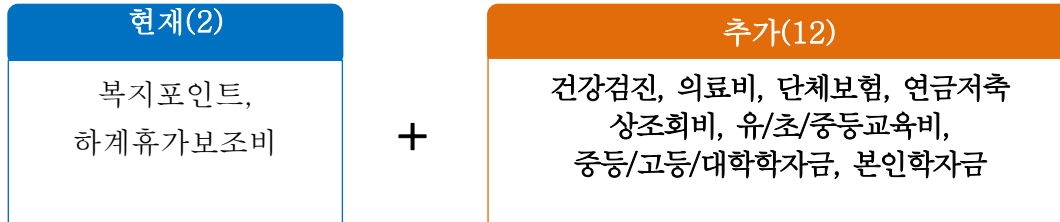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건강검진	• 부여포인트 : 35세 미만 15만P / 35세~49세 20만P / 50세 이상 30만P 부여 ※ 배우자는 15만P 부여(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함) • 사용방법 : 건강검진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 2013년부터 검진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
단체보험	• 부여포인트 : 14만P - 보장내용 : 사망 1억원, 교통사망 추가 5,000만원 / 재해장애 2,500만원, 암진단 1,500만원 ※ 배우자는 교통사망을 제외하고 사원과 동일적용 • 사용방법 : 단체보험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 2013년부터 보장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
교육비	• 부여포인트 : 지급 기준 기준(금액)과 동일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만 해당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자녀 기준) • 사용방법 : 해당 지급기준 만큼 부여된 복지 포인트로 교육비 납부 - 단, 중/고/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구ktf은 기준과 같이 납입증명서 제출 후 실비 현금 지급)
인재육성	• 부여포인트 : 30만P - 지급기준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 40세 미만인 사원 • 사용방법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에 부여된 포인트 사용

자녀 교육 보조비 및 학자금 지원

(종전 KT, KTF 기준지원 유지)

구분	KT	KTF
유아 보조 교육비	- 지원대상: 만6세 - 지원금액: 120만원(1년간)	- 지원대상: 만3세~만6세 - 지원금액: 240만원(4년간)
초등 보조 교육비	- 지원대상: 만 12세(초6) - 지원금액: 120만원(1년간)	- 지원대상: 만7세 ~ 만12세 - 지원금액: 360만원(6년간)
중등 보조 교육비	- 지원대상: 만15세(중3) - 지원금액: 120만원(1년간)	- 지원대상: 중1~중3 - 지원금액: 180만원(3년간)
중등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중1~중3 - 지원범위: 수업료 실비 - 지원금액: 연 320만원 한도	- 지원대상: 중1~중3 - 지원범위: 수업료 실비 - 지원금액: 연 240만원 한도
고등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고1~고3 - 지원범위: 수업료 실비 - 지원금액: 연 320만원 한도	- 지원대상: 고1~고3 - 지원범위: 수업료 실비 - 지원금액: 연 480만원 한도
대학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대학생 자녀 - 금액: 등록금/수업료 실비의 75% - (자녀당 8학기, 사원당 16학기 내)	- 지원대상: 대학생 자녀 - 금액: 등록금/수업료 실비의 50% - (자녀당 8학기 내, 잔여 50%는 용자)
본인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석사학위 교육 - 지원수준(전 일제 100, 야간 50%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업무관련 전공 학사/석사 학위 과정 - 지원수준: 실비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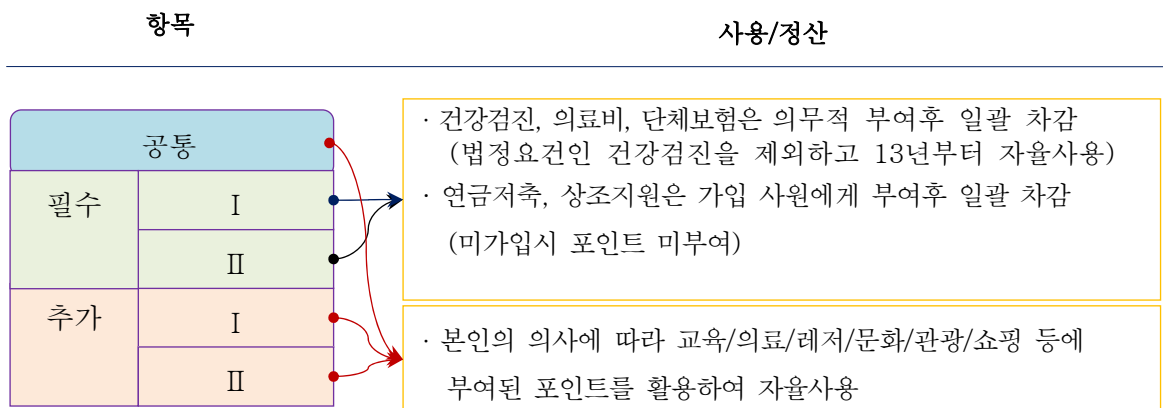
1) 선택적복지 항목 확대 운영



2) 선택적복지 포인트 부여 : 공통+필수+추가 요소에 의해 결정

- 공통 : 전사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
- 필수 : 사업주 법적 의무 항목 및 회사차원에서 Care가 필요한 항목(건강검진 등)
- 추가 : 자녀교육비 등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3) 복지포인트 사용/정산



4 항목별 지급기준

(단위: 만point)

구분		항목	부여 Point	부여기준
공통		기본	160	- 전사원 균등 배분
필수	I	건강검진	-	-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 15만~45만p
	II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24 14 60 15	- 실손의료비/단체보험 : 재원 승/사원수 - 연금저축/상조회비 : 가입한 사원에 부여
추가	I	교육비	-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 종전 kt, ktf 기준 유지
	II	인재육성	30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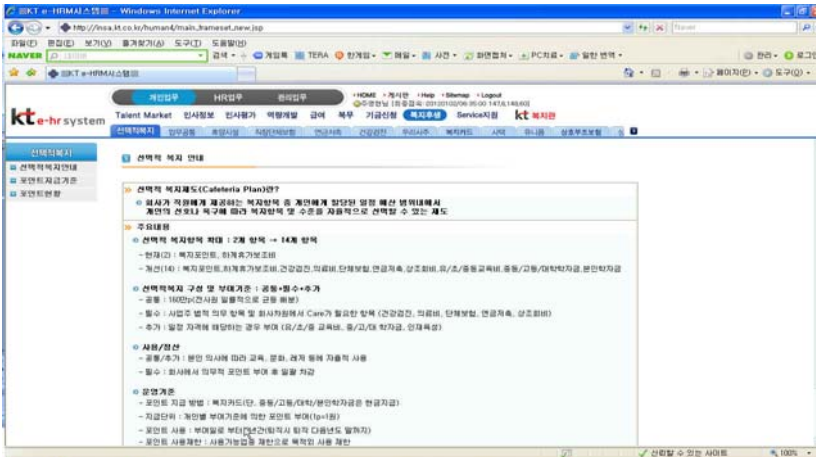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재원

(단위 : 만)

구분		항목	재원
공통		기본	복지기금 교육훈련비
필수	I	건강검진	복리후생비
	II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복리후생비
추가	I	교육비	복지기금 복리후생비
	II	인재육성	복지기금

5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 접근 방법 : 인사시스템(e-HR시스템)>개인업무>복지>복지후생>선택적 복지
- 세부 메뉴 안내
 - 선택적 복지 제도 안내
 - 포인트 지급기준
 - 포인트 현황



6 포인트 활용

구분	세부내용
포인트 지급	● 지급주기 - 공통 : 연 2회(1월 130만p, 7월 30만p) - 필수 : 연 1회 - 추가 I (교육비) : 연4회(단, 대학학자금은 연2회), 추가II : 연1회 ● 지급방법 : 복지카드 * 복지포인트 지급 원칙 단, 중등/고등/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지급 ● 지급단위 : 개인별 부여기준에 의한 포인트 부여(1p=1원)
포인트 사용	● 기한 : 부여일로부터 3년간 * 퇴직시 퇴직일의 익년 말까지 ● 제한 : 사용가능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 직원간 포인트 거래, 채무변제, 담보제공 불가 * '13년부터 건강검진,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수준 본인 선택 후 포인트 차액 자율 사용
포인트 관리	● 인사시스템 > 복지 > 선택적복지 메뉴에서 조회

7 포인트 사용 예시

• 포인트 사용 예시

□ 만42세, 자녀2(초등 6학년, 중등 2학년) 기준

(단위 : 만p)

구분	항목	부여 포인트	항목별 Plan	차감 포인트	잔여 포인트
공통	기본	160	☒ 사용(default) 160	130	30
필수 (I)	건강검진	35	☒ 본인 선택 A형 5 ☐ 본인 선택 B형 20 ☐ 배우자 15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5	30
필수 (II)	실손 의료 보험	24	☐ A형(모두가입) 24 ☒ B형(입원의료만 가입) 11 ☐ C형(배우자통원 미가입) 18.1 ※ 12년 1월초 개인별 희망조사	11	13
	단체보험	14	☐ A형(본인) 7 ☒ B형(본인+배우자) 14 ☐ C형(미가입) 0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14	
	연금저축	60	☒ 가입 60 ☐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60	
	상조회비	15	☒ 가입 15 ☐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15	
추가 (I)	유아/초 등/중등 교육	120	☒ 당해년도 부여 120 ※인사시스템 자녀 등록기준	100	20
추가 (II)	인재육성	0	☐ 사용(default) 0		
합계		428		335	93

※ 1) 가격표는 임의로 표시한 가격임(실제 시행시 가격 변동 가능)

세부항목별 변경사항

1 연금저축

구분	세부내용
지원 배경	• 구)KTF직원들에게 연금저축을 지원함으로써 세제혜택 및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지급 기준	• 지원대상 : 구)KTF직원 [2011.12.31현재 재직자] • 지원금액 : 매월 50,000원 (연금저축 가입금액이 5만원미만시 가입금액지원) • 가입상품 : 조특법 제86조의 2에 의한 세제적격연금저축 - 금융사 : 18개 금융기관 - 연간불입액의 100%전액(400만원한도)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상품 • 지원방법: 매월 급여일에 사원가입 금융기관으로 급여이체 - 회사지원금액 5만원 + 본인 추가불입금액 * 개별 가입상품 지원은 배제
신청 방법	• 구)KTF직원 대상으로만 신청메일안내 및 화면 OPEN • 상품안내: 금융사별 제안상품 설명서 링크 - 인사시스템 > 복지후생 > 연금저축신청화면 • 신청기간: 2012.1.2 ~ 2012.1.9 [가입대상 직원] • 청약명부작성: 2012.1.2 ~ 2012.1.9 [경영지원담당] • 청약서 작성 : 2012.1.2~2012.1.12 [해당금융기관 및 개인] - 청약서 작성시 금융사 및 계약조건 변경불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18개 이외 금융사 가입불가 • 회사 선정창구를 통하지 않는 개별적인 방문계약 지원불가 • 신청기간 이후 금융사 변경 불가
지원 중단사항	• 지원기한 종료전 퇴사자: 최종급여일까지만 지원 •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금저축이 해지된 경우 • 지원기간중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등 불인정 - 금융기관 불입계좌 변경시 자동 지원중단(전산조치) * 회사 지원기한 종료후에는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가능

1)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제도 설명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사원,배우자,자녀까지 비급여성 의료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사원 본인, 배우자, 만20세 이하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기준으로 지원		
지원 항목	입원/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포함)		
세부 지원사항	구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보상한도	상해/질병당 최고 1 천만원	- 외래 : 방문회당 180 회,15 만원/일 - 약제 : 처방건당 180 회,5 만원/일 * 단, 외래+처방조제 합산 20 만원이내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10%	- 회당 : 종합병원(2 만원), 병원(1.5 만원), 의원(1 만원), 약제비(8 천원) - 해당금액 공제후 지급
	병실차액	50% 보상 (단1 일 10 만원 한도)	-
	일반보장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특약보장 (한방, 치과)	급여 및 비급여	급여
	특약보장 (출산)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유의사항	※ 입원 치료비 대신 입원일당 선택 할 경우 지원사항 1일당 4만원 수준 - 지급한도 : 연간 180일 이내 - 지급제한 : 출산으로 인한 입원		
	※ 보상제외 - 해외 소재 의료기관 의료비, 피보험자의 고의, 특수 동호회 활동 사고 -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보신용/성장촉진 관련 비용 등 -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는 의료비 - 타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 직장 및 항문질환의 비급여 의료비, 인공수정, 치과의 보철 등		

2) 지원FLOW : 직장단체보험 접수처(동우기획)로 신청서류 일괄 제출

(신청사원)	(동우기획)	(보험사)
1. 보험금청구서작성 2. 증빙서류 구비 3. 메일/FAX발송	1. 미비서류 확인 2. 해당보험사 서류이관	1. 보험금 지급심사 2. 보험금 지급 3. 접수/ 지급 결과통보(사원/동우기획)

※ FAX : 0502-755-1004, e-mail : ktdongwoo@paran.com, Tel : 02-755-1004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3 kt광진지사 1층 (주)동우기획 담당 (우)143-874

3)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동의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양식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통원의료비 (처방조제포함)	1. 진료비영수증 2. 통원확인서(병명기재) 3. 초진기록지(보험사별도요구시)	
입원의료비	1. 진료비영수증 2. 진단서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입원일당	1.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5) 기존 지원과 달라진 점

- 신청범위 확대 : 사원본인 입원의료비限 -> 대상가족 전체의료비대상
- 비급여성 의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 MRI,CT진단료만 지원 -> 비급여성 전체 (단,한방,치과 비급여는 제외)
- 연간지원한도 확대 : 가족합산 연간 1천만원 -> (입원)질병/상해별 각 1천만원

+

(통원)외래15만원/건, 처방조제5만원/건(단,연간 180회 한도)

6) 보상청구 절차

I.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① + ③ + ④ - (제증명료) - (병실차액)

× 90%

+ (병실차액) × 1/2 (1일 1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액

보험금여 중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 부분을 지급.

단, 한약제 등 보신용 투약비용 및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 전화료)등은 제외

기타 면책사항은약관 참조

Ⅱ.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예시)

진료과	산부인과	환자 유형	공단
진료기간	2009.11.16~2009.12.19.(33.)		
항목	요양급여	비급여 ③	진료비 수납사항
진찰료	34,780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771,840	1,188,000	12,011,520
식대	288,720		환자부담총액⑤ (①+③)
주사료	1,012,129	997,202	8,233,880
마취료	341,706	275,760	이미납부한금액⑥
처치및수술료	1,605,223	2,986,510	1,850,000
검사료	457,095	249,998	할인금액⑦
진단방사선료	102,914	165,000	(⑤-⑥-⑦)
수혈료	102,914	165,000	6,383,880
전액본인부담		62,000	
재활물리치료	293,160		
MRI진단료		500,000	
초음파		100,000	
계	4,722,050	7,289,470	
본인부담금①	944,410		
보험자부담금②	3,777,640		

<환자유형>
 ①건강보험 : 공단
 ②교통사고 : 자보
 ③산재사고 : 산재
 ④폭행사고 : 일반으로 각 표시됨

<환자부담총액>
 : 피보험자가 병원에 수납해야 할 금액

<진료기간>
 :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간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944,410원)을 피보험자가 수납

<비급여>
 : 비급여 전액을 피보험자가 병원에 납부

40276432	20100712~20100714(3일간)	□공휴일
진료과목	장명준(DRG)번호 103	환자 구분
비급여	308,000	수납번호 20028967
진찰료	64,117	비급여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33,282	환자부담총액⑤ (①+③)
식대	0	907,452
주사료	5,775	(②)
마취료	132,509	
처치및수술료	568,266	
검사료	0	
진단방사선료	0	
수혈료	0	
전액본인부담	0	
재활물리치료	0	
정신요법료	0	
CT진단료	0	
MRI진단료	0	
PET진단료	0	
초음파진단료	0	
보철,보정료	0	
수혈료	0	
응급환의료	0	
신체진료료	259,818	
재활물리	0	
기타	0	
전환종화료	0	
보통수가진료비	0	
계	956,375	710,112
본인부담금①	197,340	
보험자부담금②	759,039	
요양기관종류	□의원급 □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응급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219-82-00046	상호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아산병원길 86	성명
수납일	2010/07/14 11:43:55	의정인
수납원	유옥영	

비급여내역 : 병차 : 3일 입원, 총액 308,000원

Check Point

(1) 상해 / 질병 입원의료비

- 일반 / 보험 적용 구분 **必**
- 의보 적용
- 가. 환자부담액 * 90 % 지급(병실차액 제외)
 - 1)지급액(의보적용) :
 - = 907,452-308,000 = 599,452원
 - = 599,452 * 90% = **539,507원**
 - 나. 병실차액(50%)
 - = 308,000 * 50% = **154,000원**
 - 다. 지급액
 - = 539,507 + 154,000 (병실차액)
 - = **693,507원** 지급

(2) 자기부담금

- 보험계약일 기준 연간 200만원의 면책금
- 200만원 이상, 90%X → 100%지급

(3) 참고 : 병실차액 지급기준

- 병실로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을 총 입원일수로 나눠 1일 평균금액이 10만원 미만이 50% 지급

Ⅲ.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 입원의료비 : 의보적용)

IV.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 통원의료비 : 외래진료)

[illegible]

Check Point

(1) 통원의료비

- 일반 / 보험 적용 구분 必
- 지급액(의보적용) : (3)+(4)=(5)
환자부담액 - 병원별 공제 후 지급
= 21,640-20,000 = 1,640원 지급

- 지급액(의보 미적용)
본인부담·병원 별 공제금액 * 40%
= 21,640-20,000 = 1,640원 지급
= 1,640원 * 40% = **656원 지급**

(2) 약관 지급기준

- 통합치료시 공제금액
의원급 : 1만원
병원급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내 180회 지급

V.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

약 제 비 계 산 서 · 영 수 증		주 약 번호		241
(원자모의증)				
영수증 번호: 100520-241(10824)				
사업자등록번호	203-74-68779	상 호	신비로약국	
사업점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2-4			
조 제 일 자	회 자 등록 번호	회 자 성 명	조제일수	신약
			7 일	☐ ☐
본원 부담금 ①	6,700	비급여 약제비 ③	기타진료본원부담금 ④	
공단 부담금 ②	15,800	수납금액	5,166	
공단 부담금 ②	15,800	본원 부담액 ① + ② + ④	수납회인	
총액(①+②+③+④)	27,756	11,800	11,800	유주선

요양기관대표자 최 정 현



Check Point

(1) 10.05.20 수납액

- 약국수납 : 11,800원

(2) 지급금액(09.10.01 이후계약)

- (의보적용)약국수납 - 8,000
=11,800-8,000
=3,800원 지급
- (의보미적용)약국수납 - 8,000 * 40%
=11,800-8,000 * 40%
=1,520원 지급

(3) 약관 지급기준

- 처방조제비는 병원과 별도공제
- 1일당 공제금액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의사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VI. 기타 사례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예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또는 폭행 사고등)
- 지급기준 : 1) 입원시 -> 환자부담총액 * 40% 지급
- 2) 통원시 -> (환자부담총액 - 대학병원20,000원) * 40% 지급

7) 통원의료비 사례 예시

I. 동네 병원에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긴 경우

<상황>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X레이 촬영 등 의사소견상 폐렴이 의심되니 좀 더 상급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고 권고함.(진료비 2만원)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인 XX대학병원으로 가서 CT촬영 등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폐렴으로 확인됨.(진료비 18만원)
처방전 받아 병원 옆 약국에서 3일분 약 조제받음.(1.5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둘 중 높은 공제금액 1회만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진료내역 모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총진료비 20만원 중 2만원 공제하여 18만원 산출. 그러나 1일 15만원 한도이므로 최종 15만원 지급. 처방조제비 1.5만원 중 8천원 공제 후 7천원 지급받음.

병원	진료과목	수납금액	공제금액	차감금액	보상금액	비고
동네병원	내과	2 만원	상급적용	2 만원		
XX 대학병원	내과	18 만원	2 만원	16 만원	15 만원	한도
병원 옆 약국		1.5 만원	8 천원	7 천원	7 천원	

=> 최종 지급 보험금 : 157,000원 (횟수 1회 적용)

II. 동일 증상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 받은 경우

<상황> 두통이 너무 심하여 XX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으나,(진료비 4만원) 진료 결과 이비인후과 증상이 의심된다며 다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진료비 5만원)
처방전 받아 병원 옆 약국에서 3일분 약 조제받음 (1.2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두 진료과 진찰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1회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1차 진료 후 2차 진료과로 추가 진료하는 과정상의 연관성(의사소견서 등)이 증명된다는 전제하에 진료비 총액 9만원에서 공제금액 2만원을 제외한 7만원 지급. 처방조제비 1.2만원 중 8천원 공제 후 4천원 지급받음.

동일질병 & 같은날	진료	수납금액 (a)	공제금액 (b)	차감금액 (a-b)	보상금액	비고
XX대학병원	신경외과	4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XX대학병원	이비인후 과	5만원		5만원	5만원	
병원 옆 약국		1.2만원	8천원	4천원	4천원	

=> 최종 지급 보험금 : 74,000원 (횟수 1회 적용)

Ⅲ. 다른 증상으로 하루 2번 통원을 받은 경우

<상황>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가(진료비 3만원) 집에서 쉬던 중, 오후에 갑자기 장염 증상을 보여 XX대학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 귀가함(진료비 20만원)
병원 근처 약국에서 2일분 약 조제받음(5천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둘 사이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진료이므로 각각 적용.
치과 : 1만원 / XX대학병원 : 2만원
- 보상금액 결정 : 두 개의 별도의 사고로 보아 보상한도액(15만원)도 각각 적용.
따라서 치과의 경우 3만원 중 공제금액 1만원을 차감한 2만원 지급.
장염에 대한 진료비는 20만원 중 2만원 공제한 18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1일 보상한도액이 15만원이므로 최종 15만원 지급.
처방조제의료비는 8천원 미만이므로 지급 없음.

다른질병 & 같은날	진료	수납금액 (a)	공제금액	차감금액 (a-b)	보상금액	비고
치과	치과	3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XX 대학병원	장염	20만원	2만원	18만원	15만원	한도
병원 근처 약국		5천원	8천원			한도

=> 최종 지급 보험금 : 170,000 원 (횟수 2회 적용)

IV.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경우

<상황> 운동 중 허리를 삐끗하여 XX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 받음(2.5만원)

이후 허리 주변 근육 및 연골재생에 좋다는 XX약물 2개월치를 복용하라는 한의사의 권고에 따라 구매함. (40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병원급이라는 전제 하에 1.5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침/물리치료 비용 2.5만원에서 공제금액 1.5만원 차감한 1만원 지급.

XX약물은 건강보험 비급여인 보첩비용으로서 보상에서 제외됨.

=> 최종 지급 보험금 : 10,000 원

V.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상황> 식사 중 이물질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져 신경치료를 5회 받음.(각 7천원)

신경치료 이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파손된 치아를 보충할 재료에 대해 논의함. 아말감인 경우 3만원, 레진인 경우 12만원, 크라운(금니)인 경우 35만원 예상됨.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의원급이라는 전제 하에 1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5회 모두 공제금액 이하이므로 보상에서 제외됨.

아말감인 경우 3만원에서 1만원 제외한 2만원 지급 가능.

레진, 크라운(금니)인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이므로 보상에서 제외됨.

=> 최종 지급 보험금 : 아말감인 경우만 20,000 원

8) 통원의료비 제한 조건

I. 공제금액

<공제조건>

의원급 : 1만원

병원급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처방조제의료비 : 8천원

<공제방법>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해마다 공시되면 전국 약 30개 내외로 지정됨. 반드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 서울대병원(O), 서울대보라매병원(X)=> 병원급

II. 보상한도

<보상한도>

1년 180회 한도.

- 동일 질병으로 1일 2개 병원에 방문한 영수증은 횡수 1회로 적용
- 동일 질병으로 2일동안 방문한 영수증은 각각 1일 1회 즉 횡수 2회로 적용
- 다른 질병으로 1일 2개 병원 방문한 영수증은 각각의 질병으로 횡수 2회로 적용

<기간계산>

회수 한도는 동일 질병/상해에 대해서 1년 180회 한도로 제한되는 것임.

(1일 1회 병원방문 가정)

보험기간이 1/1 ~ 12/31 이라는 가정하여 2월 초 골절로 4월까지 60일 통원을 하였다면, 연말까지 다른 질병 등으로 통원할 수 있는 회수가 120일 남았다는 것을 의미함.

(동일질병이라면 1일 방문한 모든 병원의 영수증은 1회로 적용됨, 1일 2회로 횡수 적용되면 일수는 180일 이내일 수 있음)

※ 상호부조제도 안내(선택적 복지포인트 미적용)

1)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시행 배경	• 임직원간 상호부조를 통해 애경사시 동료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임직원 상호간 일체감 형성								
지급 기준	• 적용일 : 2012.01.01 • 전체 임직원 (전권, 청경, 고객센터직, 재직전출자 포함) • 재직직원으로 보험료 납부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사유발생직원								
상호부조비	• 월 4만원 (본인 2만원, 회사 2만원) • 본인 : 매월 급여일 공제 (최초 2011.12월, 효력발생: 2012.1.1) * 급여 무급시 : 회사에서 대납, 복귀시 대납한 기간 만큼 분납								
지원기준	• 지급액 : 지급사유당 500만원(총 2회 한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사망: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모든 사망 형태) - 결혼: 본인 및 자녀 (재혼 포함) • 미사유발생자 : 본인 거출금의 1.1배 환급(최대264만원) - 단, 납입기간 10년 경과자로서 10년내 수혜실적이 없는 자는 납입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부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조치 방안 마련 후 시행 • 지급제한: 당사자(사망/결혼)기준 중복지원 불가(형제, 자매 제외) • 상호부조금 청구소멸 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회수기준	• 회수 :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빙서 미제출시 - 허위,부당청구등에 따른 책임은 본인 및 지급승인 부서장에게 있음 • 보험청구권소멸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부서장) - 인사시스템 접속> 복지> 상호부조보험 메뉴에서 입력 - 발생대상자 등록 → 보험사로 자동 신청 → 지급증서 출력 및 전달 • 지급 (보험사) - 보험사는 아래 기한내 지정된 임직원 별도계좌로 입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th style="width: 85%;">지 급 일</th></tr> </thead> <tbody> <tr> <td>결 혼</td><td>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td></tr> <tr> <td>사 망</td><td>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td></tr> <tr> <td>퇴 직</td><td>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td></tr> </tbody> </table> • 증빙서 제출 - 해당 사원은 개인정보동의서 및 증빙서 스캔후 인사시스템에 등록 → 보험사로 증빙서류 첨부되어 메일 신청	구 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구 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2) 상호부조금 신청 증빙서류

구 분	사 유	입증서류
전분야 공통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양식다운로드)
축의	본인 결혼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자녀 결혼	- 직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조의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사망 진단서, 확인서, 사망 사실이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사망의 경우 발령문서 -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 - 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예) 배우자 부모 사망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사망	- 사망 사실 증명서 - 자녀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본인퇴직(미수혜)	- 퇴직발령문서(본사담당 일괄 신청)

복지제도 개선 Q&A

Q1. 2012년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복지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를 충족하고, 이원화된 복지제도 통합 및 개인별 복지내역을 포인트로 계량화하며, 복지제도를 간소화 시켜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Q2. 복지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는 데 복지포인트가 무엇인가요?

A. 복지포인트란 개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에산을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1포인트는 1원에 해당됩니다. 1포인트는 1P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Q3. 직원간 복지포인트 거래는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습니다.

Q4. 복지포인트는 언제 주나요?

A. 공통 :1월 130만P /7월30만P ,
필수 :1월, 추가 :유,초,중교육비(3,6,9,12월), 인재육성 1월 30P

Q5. 내 복지포인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인사시스템 > 복지 > 복지후생 > 선택적복지화면

Q6.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필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인 건강검진,의료비,단체보험 포인트는 부여후 완료시점에서 회사에서 자동차감합니다. 13년부터 건강검진수준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잔여포인트는 자율포인트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회사에서 일괄 차감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건강검진/의료비/단체보험과 연금저축/상조회비(가입직원만)입니다.

Q8. 연금저축/상조회비를 포인트로 지급한후 차감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가입된 사원에 한하여 연초에 연간 포인트를 부여하되 필수포인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관리화면에서만 부여후 차감되는 포인트입니다.

즉 연금저축/상조회비 본인부담금과 회사에서 부여된 포인트가 합산되어 해당 금융기관으로 불입됩니다.

Q9. 2012.2.1일 신입사원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공통포인트는 1월과 7월에 지급함에 따라 2.1일부터 6.30일까지 잔여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인재육성 포인트는 1월에 지급함에 따라 2.1일부터 12.31일까지 잔여기간 동안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 다른 포인트는 별도의 지급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10. 퇴직후 복지복인트 잔액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퇴직일의 익년도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카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휴직자인 경우 포인트 부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창업휴직후 1년이 초과된 휴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Q12. 올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재직사원인 경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Q13.건강검진비용이 부여된 복지포인트보다 적은 경우는 잔여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A.13년부터 건강검진후 잔여포인트는 자율포인트로 자동전환되어 자율 사용가능합니다.

Q14. 복지포인트로 변경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 병원에서 하시게 되며, 2013년부터 검진 수준을 본인이 선택 후 잔여 포인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항목으로 반드시 기본항목 포인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Q15. 교육비도 포인트로 부여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항목은 복지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중/고/대학학자금 및 본인 학자금(구ktf)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Q16. 공통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면 되나요?

A.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Q17. 인재육성 포인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 하나요?

A. 입사 10년차 이하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사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구ktf직원)에 한함)

Q1. 연금저축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사시스템 접속 > 복지후생 > 연금저축등록 화면에서 금융기관별 상품설명서 검토 후 금융기관선택 및 가입금액 입력 저장하시면 선택하신 금융사에서 개인별로 연락하여 가입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Q2.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으로 지원받을수 있나요?

A. 지원불가합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화면에서 선택한 금융기관 및 연금상품(계좌)으로만 지원가능합니다.

Q3. 연금저축 금융기관이나 연금상품(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A. 변경불가합니다. 가입당시 금융기관, 연금상품(계좌)로 10년간 지원되므로 변경시 지원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Q4. 연금저축 가입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인사시스템상 연금저축 가입은 신청기간은 2012.1.2~2012.1.9 까지이며, 금융사-개인간 청약 기간은 2012.1.2~1.12일까지 신청 완료를 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5.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납입금액의 100%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400만원한도입니다.

의료비

Q1.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입원의료비)한 경우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통원의료비)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Q2.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중인 직원 및 직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인사가족사항 등재기준으로 일괄가입 후 연말정산 자료 등을 통해 미대상 제외)

Q3. 2011년도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2012년 상반기에 기존 의료비 신청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마감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Q4.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금 청구서 작성(인사시스템다운로드) -> 출력 -> 자필서명한 보험 청구서 및 영수증 스캔자료를 (주)동우기획[보험대리점]으로 메일 또는 FAX 전송하시면 됩니다.

(e-mail : ktdongwoo@paran.com FAX : 0502-755-1004)

Q5. 개인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입원 의료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정부방침에 따라 200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중복 보장은 불가합니다.

단, 입원 일당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Q6.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에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동우기획으로만 할 경우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므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Q7. 2012년부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추가 가입되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 이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2012년 최초가입시에는 일괄가입(입원의료비형, 통원실손의료비형)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1월중 별도 변경기간을 두어 입원의료비 유형 선택 및 통원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 의료비보험이 있는 분에 한해 미가입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Q8.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한방병원과 치과치료 입원의 경우는 보험급여 외에 비급여도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비용과, 보철(금니,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은 제외됩니다.

Q9. 병실료 및 식대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병실료의 경우, 기준 병실료(보통 6인실)과 병실료와의 차이 50%를 보상합니다.
단, 기준 병실료와의 차이액은 1일 한도 10만원

Q10. 임신중 초음파 검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그 외 출산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기형아, 양수검사는 제외)

Q11. 통원의료비 및 본인부담금(종합병원 20,000원 공제, 일반, 약제비 공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통원의료비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동네병원(1차진료기관)은 1만원, 중형병원(2차진료기관)은 1.5만원, 대학/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은 2만원,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1일 통원을 한 비용이 7만원이고 약제비가 1만원이라면, 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제외한 5만원과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한 2천원, 합산 5만2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Q12. 의료비의 경우 1년치를 모아서 해도 상관이 없나요?.

A.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이므로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기간(1/1~12/31)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청구하시는 기간(1년) 사이에 보험사가 변경되면 각각 담보하는 기간별로 나누어 2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13. 치과진료로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면 20만원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치료 목적으로 시술되었고,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는 보철(금니,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은 제외됩니다.

Q14.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수혜를 받으려면 정확히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A. 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고란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 발생일, 질병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입원의료비의 경우 입원 중에 보험기간(12/31)이 종료되어 보험사가 변경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계속 입원이 이어지는 경우 이전 보험사에서 보장합니다.

Q15. 가족의료나 단체보험이나 가입에 따른 가입증서, 증권을 개인에게 보내주나요?

A. 현재 단체계약 증권, 영수증, 약관 등은 계약자(KT)에게 송부하여 피보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약관은 현실적으로 수 천, 수 만 명 되는 피보험자 전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PDF 파일 **등으로** 열람하실 수는 있도록 자료실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Q16. 부부사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겹치는데, 가입선택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부부사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사원자격으로만 가입가능하며 배우자자격으로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사원 양쪽에 등록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자사원이 가입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인데 1명씩 부부사원 각각의 가족사항으로 등재된 경우는 등재된 사원을 기준으로 가입 선택하면 됩니다.

Q 17. 의료비단체보험도 포인트 지급 후 일괄차감하나요?

A. 최종 가입결과에 따라 일괄 차감합니다. 미가입 선택시에는 해당 잔여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Q18. 입원일당을 선택 한 사람은 입원의료/입원일당 선택사항을 내년 초 변경 가능한가요?

A.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중 이미 선택완료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없이 일괄 가입하였으므로 1월 중에 가입선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기간 동안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통원실손형으로 가입됩니다

※상호부조(선택적 복지포인트 미대상)

Q1. 상호부조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임직원 상호간에 일정한 금전을 정기적으로 거출하여 적립 후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 부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상호부조 제도의 가입자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재직중인 임직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상호부조 제도에 가입되게 됩니다.

Q3. 상호부조비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고, 거출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매월 급여에서 2만원씩 공제되어 상호부조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Q4. 연금저축 처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나요?

A. 상호부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Q5. 상호부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본인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A. 상호부조금은 보장성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운영되게 되며, 보험의 위험제한 기능(umbrella effect)에 따라 경조사가 초과 발생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재원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여 상호부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한 후 중도인출을 통해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직원의 본인 거출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Q6. 경조사 발생시 상호부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상호부조의 본래 특성에 따라 회사의 경조금 지원과 달리 본인이 아닌 부서장이 신청/승인함으로써 보험금 방식으로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증빙자료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요?

A. 전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임직원 애.경사 발생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상호부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통 문화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경조사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위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상호부조제도의 운영될 수 없으므로 임직원 모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Q8. 부부사원의 경우 동일한 지급사유건으로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원별로 각 2회씩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재직기간중 경조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요?

A. 회사에서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GWP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이 부담한 금액만큼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본인 납부액의 1.1배(최대 264만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입기간 10년 경과자로서 10년내 수혜실적이 없는 자는 납입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부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조치 방안마련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Q10. 제도의 제외대상(인턴, 전문프로젝트, 일반계약직)은 가입할 수 없나요?

A. 가입이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재직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상의 문제점 및 장기간근무가 요구되는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Q11. 증빙서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기준일 인지? 아니면 실제 결혼일(청첩장, 사진 등) 기준 인지요?

A. 상호부조 제도는 실제 결혼식을 축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취지이므로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혼인신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신고일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시면 지급됩니다.(단, 허위, 부당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 및 승인처리 부서장에게 있음)

※ 사유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 거행하지 못하고 혼인 신고만 할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 결혼식을 완료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 1차 30일 이내 청첩장 및 결혼일자가 표시된 결혼식 사진 제출, 최종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Q12. 2011년도에 결혼을 하고 2012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지급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결혼일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2012.1.1 이후에 거행된 결혼식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2011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도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상호부조제도가

보험가입 방식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계약법 (상법 제 4편)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중 하나인 "보험사고가 확정된 계약" 에 해당되어 이를 어길시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Q13. 지급사유 발생시 관리자로부터 받은 '지급증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요?

A. 법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상 주말/휴일에 장례시 지급이 곤란하므로 운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지급증서를 먼저 드린 것 입니다. 장례행사 종료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14. 소멸시효(보험금 신청 기한)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지요?

A. 불가능합니다. 퇴직을 하였더라도 지급가능 기간내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Q15. 육아휴직, 재직전출 등 무급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상호부조비는 보험료 형태로 납부되기 때문에 매월 연속적으로 납부 되어야 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먼저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복귀 이후부터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월 4만원씩 공제하며, 잔여 회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일괄회수 합니다.

※ 분할기간 예) : 12개월 휴직 후 복귀시 → 복귀일로부터 12개월 분할 회수

Q16. 신규입사 및 퇴직의 경우 보험금 지급 유효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기본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보험료 납부(급여공제) 이후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되며,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포함한 퇴직시 까지 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인정 됩니다.

※ 효력발생 예시

- 신입사원 : 7.1일 입사, 최초보험료는 7.25일 납부 경우
- 7.24일 이전까지 사유 발생분(불인정), 7.25일 이후 사유발생분(인정)

- 퇴직시 : 최종 보험료 납부 7.25일(급여공제), 7.28일 퇴직
- 7.28일 사유 발생분 까지 인정(7.29일 이후 발생분은 불인정)

Q17. 재직기간 중 보험금 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에도 계속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A. 예, 2회를 수령하였더라도 퇴직시 까지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제도는 일종의 '계모임'형태이므로 수령하였더라도 계속 납부를 하여야만 재원이 마련되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18. 상호부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경조금 신청 관련 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은 있는지요?

A. 없습니다.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Q19. 사내 직원간 결혼하는 경우 본인 결혼으로 각각 수혜를 받은 것으로 수혜누적건수가 관리 되는지요?

A. 네, 결혼 전 각각 경조금을 수혜하게 되므로 각각 1회 수혜로 관리됩니다.

Q20.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 등 사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A.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발생시 소속 관리자께서 당사자 주민번호 등 직접 등록을 하게되므로 오류확인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등재해 놓을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에 등록된 가족주민번호, 성명 등도 확인,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1. 개인이 납부한 상호부조비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불가합니다. 개인이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상호부조 회비' 입니다. 다만, 운영의 편리상 상호부조 회비를 회사지원 비용과 합산하여 회사명의(보험계약자 : kt)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복지 항목

청원휴가 대상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본인			7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
회갑/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선택 1
사 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6	
	자녀	조부모 (여직원의 시조부모, 남직원의 처조부모 포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
	조부모(여직원의 시부모 포함)				
출 산	배우자(처)			3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여직원 출산 전후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90	휴일포함 (70일초과분은 무급)
	임신 16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45	
	임신 12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3	
	태아검진 휴가			월1일	
재 해	수재, 화재 등 중대 재해			3	

병가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1. 관련규정

보수규정	○ 제30조 (수당의 지급제한) 월 7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의 경우 그 병가기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
복무관리지침	○ 제3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봄. (일반병가) ○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 (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입원병가)
급식통근비	해당 일수 만큼 제외

※ 통원치료 기간은 주 1회 이상 통원 시 입원병가를 부여

2. 지급기준

병가 시	○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통근비 공제 (7일 초과시 그 기간/일수) ○ 연차휴가 부여로 간주 (단, 일반병가 한) ※ 기타 정상지급 기준연봉 월정액(기준급+역량급), 성과급(전사, 부문, 팀, 개인)
병가로 인한 직권휴직 시	기준연봉 월정액만 지급
의원휴직 시	미지급

연차휴가 산정 기준

유 형 별	산 정 식
정상근로 (8할 이상)	$15 + \text{가산일수, 가산일수} = (\text{근속년수}-1\text{일}) \div 2$ (※ 소수점 절사)
8할 미만 출근	○ 연차휴가 미부여 (※ 결근 시에만 적용)
근속 1년 미만자	○ 부여기준 - 전월 만근시 월1일 부여 - 입사 후 다음해 1월1일에 부여 (※ 15일-기사용 일수) ○ 근속 1년 미만 퇴직 시 - 월1일 누적발생일수 - 기사용 일수 = 수당지급일수
교육파견자 (해외,국내 학위과정, MBA 등)	○ $(15 + \text{가산일수}) \times \text{출근일수} / \text{소정근로일수}(365\text{일})$ (※ 산식대로 산정 후 1월에 재계산 부여)
휴직후 복직 (청원,직권)	○ 전년도 출근률($\text{출근일수} / \text{소정근로일수}$)이 8할 이상 → 연차 정상 부여 ○ 전년도 출근율($\text{출근일수} / \text{소정근로일수}$)이 8할 미만 → $(15 + \text{가산일수}) \times \text{출근일수} / \text{소정근로일수}(365\text{일})$
육아휴직	○ $(15 + \text{가산일수}) \times \text{출근일수} / \text{소정근로일수}(365\text{일})$
전문임원	○ 입사년도: 입사월 기준 잔여월 ○ 익년도: 15일 부여

국내 이전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100km이상 200km미만	200km이상 300km미만	300km이상 400km미만	400km 이상
전 직원	35만원	40만원	45만원	50만원

통신비 지원

■ 집전화 지원기준

기 준	내 용
지원금액	집전화 통신비 1만원
지원대상 (1인 1대)	- KT 직원 QOOK 집전화(주택용 전화) 단, 인터넷전화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화명의>인사시스템에 등재된 본인 외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전화인 경우도 포함
지원범위 (기본료 및 정보이용료 제외)	- 시내, 시외, LM, 국제 등 요금제를 포함한 통화료 (또는 이용료, 월정액) - 부가서비스료(이용료) 단, CP와의 정산 또는 회수대행성 서비스는 제외(링고 등) - 기본료 성격인 신 요금제 BOT 월정액이나 싱글요금제 월정액인 경우 급지에 따른 해당 기본료를 제외한 금액
월 지원금액 적용순서	① 시내통화료 ② 시외통화료 ③ 부가서비스료 ④ LM 통화료 ⑤ 국제통화료 ⑥ 기타이용료 ⑦ 신 요금제, 싱글 요금제 기본료 형태의 월정액인 경우 급지에 따른 기본료 제외한 금액

※ 요금청구: 월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이동전화 지원기준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제 외 대 상
국내음성/영상통화료, 기본료, 문자메시지, 데이터서비스 일부	사용료 전액지원	정보이용료(유료콘텐츠이용), 소액결제, 국제전화 및 해외로밍서비스

※ 지원제외 정보이용료:

무선 Show Site 에서의 벨소리, 통화연결음, 게임 등 유료 표시의 콘텐츠/서비스 일체

※ 회사지원 무선데이터:

무선인터넷 접속 통화료, 유료표시가 없는 무료 뉴스나 무료 콘텐츠, MMS/SMS는 회사지원

■ 아이패드 3G 이용요금 지원기준

※ 아이패드지급: 2010.12.22~2011.1.13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제 외 대 상
아이패드 (2010 단체교섭 관련 전 직원 무상지급)	매월(월초~월말) 기준 3G 데이터 2GB 무상지원(27,500 원/월)	초과분 개인부담 (0.025 원/0.5KB)

급식통근보조비 지급

기 준	내 용
지급 근거	2010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2010년 10월 28일)
지급 내용	급식 및 통근보조비 실적급 전환(월 상한액 273,000원)
시 행 일	2010년 11월 지급 분부터
지급 산식	1. 출근일수 × 지급단가 2. 지급단가: 일13,000원 (급식 7,000원, 통근 6,000원) 3. 월 상한액 273,000원 (21일)
지급 제외	1. 현물로 급식이 제공되거나, 급식통근보조비 상당금액이 별도로 지급 되는 경우 - 식비 또는 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교육/워크샵, 운동선수단 등 - 차량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이에 준하는 차량제공 시 통근보조비 미지급 2. 해외사무소 근무기간 또는 해외 교육파견 기간

긴급출동보전비 지급

■ 지급대상

- 통신시설 장애 발생 및 시스템 버전업 작업 등 근무시간 외 출동된 작업자

■ 지급기준

근무 시간	식사시간대 포함여부	지급금액	내역
3시 간 이 상	기본	58,000원	○ 긴급출동보전비(35,000원) + 일비(13,000원) + 식비(7,000원) + 간식비(3,000원)
	2식	65,000원	○ 긴급출동보전비(35,000원)+일비(13,000원) + 식비(14,000원) + 간식비(3,000원)
	3식	72,000원	○ 긴급출동보전비(35,000원)+일비(13,000원) + 식비(21,000원) + 간식비(3,000원)
3시 간 미 만	기본	30,500원	○ 긴급출동보전비(35,000원/2)+일비(13,000원)
	1식	37,500원	○ 긴급출동보전비(35,000원/2)+일비(13,000원) + 식비(7,000원)

■ 세부내역

- 근무시간 의미: 회사 또는 장애지역(현장) 도착부터 복구시간(작업완료)까지. 연장 근무 시간대(18:00 ~19:00)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산정
- 교통비는 기본 일비지급 외 추가 경비 발생시(자가차량 이용 등)는 실비 보상. 대중교통 이용시 영수증 첨부, 자가차량 이용시 기동장비관련 지침 중 (제7장)자가차량 운영기준 적용
- 1일 2회 이상 긴급복구 투입시 교통비, 식비 추가 소요비용 발생분 지급 가능 ※ 야간비상출동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숙휴처리 (단체협약 제59조)
- 참고사항
 - 근무시간: 09:00 ~ 18:00 (연장근무 시간대 18:00 ~ 19:00)
 - 야간근무: 22:00 ~ 06:00
 - 휴일근무: 휴(무)일에 8시간 이상 근무시

리프레시 휴직제도

1. 추진배경

장기근속자의 재충전을 통한 장기적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생애설계 지원

2. 주요내용

○ 대상자 및 처우

구분	휴직 기간	보수 기준
근속 10년 이상자	6개월	기준연봉 월정액의 80% 지급
근속 20년 이상자	6개월, 1년 중(선택)	

※ 단, 구KTF 조합원은 KTF의 재직기간(경력포함)과 KT재직기간의 합을 적용

신청 자격	○ 부장 이하 전 조합원 ○ 최근 6개월 이내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복귀자 등 제외) ※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다수 조합원 기회 부여 차원)
절 차	○ 리프레시 휴직 시행 공고 및 희망자 지원 - 근속 20년 이상자는 본인 희망시 6개월 또는 1년 선택 가능 - 단, 근속 20년 이상자가 6개월 휴직 후 추후 다시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휴직기간 중 자기계발계획서 제출 ○ 각급 기관 인사위원회 심의 - 현업 단, 부문 단위(본사/지원부서/독립사업부서는 인재실 주관) ○ 대상자 선정(기관별 인원규모는 별도 통보 예정) - 복무서약서 징구, 이중취업, 목적 외 활동 금지

운 영	○ 중도 복귀 및 분할사용 불가 ○ 복귀 시 원 소속 복귀 원칙 - 본인 희망시에는 텔런트-마켓을 이용하여 이동가능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삽입 ○ 휴직 중 복지는 재직직원과 동일하게 지원, 개인성과평가는 C등급 부여 - 단, 6개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평가(C등급)와 잔여기간의 평가결과를 가중 합산 예) {(C등급(71점)+정기인사평가 A등급(95점)}/2= 83점 → B등급 ○ 휴직기간 중 의원면직, 명예퇴직, 전직지원휴직 등은 가능 - 평균임금산정은 휴직 전 정상 근무시의 지급 금액 기준 [보수규정 제44조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시행 시기	○ 매년 3월 1일, 9월 1일(2회 시행) ○ 시행주기 : 반기별

창업지원 휴직제도

1. 추진배경

재직중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및 경력전환 체험기회 부여

2. 주요내용

휴직기간	○ 최소 1년6개월 ~ 최대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 6개월 - 본인 희망에 의해 최장 2년간 추가 휴직 가능 (6개월 단위)
보수기준	○ 유급: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만 지급 ○ 무급: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후의 기간
대상분야	제한 없음 (개인이 희망한 모든 창업분야)
지원자격	○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조합원 중 희망자 - 구KTF 조합원은 KTF의 재직기간(경력포함)과 KT재직기간의 합을 적용
지원내역	○ 창업교육 및 컨설팅 희망시 지원 ○ 희망시 KT사옥 유희상면 임대 지원(유상) ○ 시중 은행과 제휴, 명예퇴직금 50% 범위 내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절차	○ 창업지원제도 시행 공고 및 희망자 지원 ○ 창업신청 - 해당기관 인사담당부서(단), 사업부서는 부문, 그 외 부서는 본사 인사담당에 신청 - 제출서류: 창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휴직 희망기간 포함),이력사항

심의 및 선정	○ 창업심의: 창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예심의, 본심의) 선정 - 예심의(1차): 소속 기관/부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1차 심의 통과자에 대하여 온라인상에 창업신청 등록(기관 담당) - 본심의(2차):인재경영실 인사담당 주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의기준 - 예심의(1차): 사업계획의 적성성, 창업가 정신 등을 평가하여 1~4등급 부여(2등급 이상자에 한하여 본심의 상정) - 본심의(2차): 본심의 상정자를 대상으로 적합/부적합 판정, 심의결과 합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적합자로 선정
협약체결 증빙서류	○ 창업선정자 협약서 체결 - 창업자로 선정된 후 2주 이내 - 체결내용: 휴직기간, 의무와 책임 한계, 인사 처리 등 ○ 창업선정자 증빙서류 제출 - 휴직발령 후 1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계약서 - 반기 익월(휴직기간) 진행상태 통보(인재경영실 인사담당)
운영	○ 의무휴직기간(1년6개월) 이내 복직 불가 ○ 추가 휴직기간중 복귀 희망시에는 복귀희망일 1개월 전 복귀희망서 제출 ○ 1년 6개월 이내의 추가 휴직기간을 신청한 직원이 추가 연장(6개월 단위)을 희망할 경우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본사 통보 ○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복귀 시 원 소속 복귀 원칙 - 본인 희망시에는 텔런트-마켓에 등록하여 이동 가능 ○ 휴직기간 중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경고 또는 협약서 해지시 즉시 복귀 예)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경쟁사를 이롭게 하는 업종 또는 활동, 회사상표, 상호, 로고 또는 직책, 직위 등을 임의로 기재, 표현하는 활동 등(세부 의무사항은 차후 확정) ○ 휴직기간의 인사평가 등은 리프레시 휴직과 동일 - 단, 휴직기간 중에는 승격 없음 ○ 휴직기간 중 의원면직, 명예퇴직 가능(단, 전직지원휴직 미부여) - 평균임금산정은 휴직 전 정상 근무시의 지급 금액 기준
시행시기	매년 4월 1일, 10월 1일(2회 시행)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원 기준

[퇴직연금제 도입]

- 도입유형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2012년 하반기 한 해 확정기여형(DC형) 전환 가능(추후 별도 합의시행)
근거) - 근퇴법 개정안 시행: 2012.7.1~
 - 제도 선택 확대: DB/DC 동시가입 허용
 - 퇴직금 수급권 강화: 금융기관이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등
- 시행시기 : 2011.1.1일자

퇴직연금제 유형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개념	• 현 퇴직금제도 운용방식과 동일 • 노사가 사전에 개인이 받을 급여수준을 확정 • 퇴직 시 약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매년 중간정산) •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상품을 직원이 직접 선택/운용 • 퇴직 시 상품운용 결과에 따른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급여수준	• 퇴직시점 평균임금 x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새로 계산)	• 직원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
운용책임	• 회사 - 운용손익은 회사에 귀속	• 직원 - 운용손익은 직원에 귀속

중도인출 (중간정산)	- 불가능 ※ 퇴직시에는 가능	- 가능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 시)
담보대출	가능(적립금 50% 한도 내)	가능(적립금 50% 한도 내)
개인 추가적립	불가능	가능
제도전환	DC형 전환 가능	DB형 전환 불가능

※ 중도인출 요건: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

[연금저축]

- 지급대상: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기준: (구 KT직원) 2007년 1월 25일 재직자 한,
(구 KTF직원) 2011년 12월 31일 재직자 한
- 지원금액: (구 KT직원) 2007년부터 10년간 매월 5만원
(구 KTF직원) 2012년 1월부터 10년간 매월 5만원

[형사피의보상]

- 지원대상: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
- 지원금액: 무제한(구속기간 중 임금, 벌금, 변호사 수임료(500만원 한도))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 보건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2,810원
- 근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복지시설 운영비]

- 구내식당: 월 50만원 범위 내(대상 : 건물상주 인원이 100인 미만인 구내식당 운영기관)
- 의무실: 월 3만원
- 이발소: 월 5만원

- 예식장: 월 10만원
- 테니스장: 월 10만원

[안전관리자 위탁]

-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3,750원
- 근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유해작업장건강관리비]

- 지원대상: 선로, 전람, 전력, 전송, 전용, SLMOS, DELMONS, LCR, 시험실, 국제수동교환 등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부서(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달한 집행지침 참고
- 지원단가: 1주당 6천원(단, 전람직은 1만2천원)

[VDT예방 활동비]

- 지원대상: 국제교환업무(국제전화국), 115전보 및 무선통신(전신국), 기업고객상품상담 접수 RSB석
- 지급기준: 기관당 월 30만원, 1인당 월 5천원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 측정대상: 유해작업장(맨홀/축전지실 등) 측정수수료
- 측정료: 측정기관과 수수료 별도 협의

[춘추계 체육행사비]

- 지급대상: 임직원 및 계약직
- 지급단가: 1인당 연간 4만원(춘·추계 각 2만원)

[건전모임 지원]

- 지원대상: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2만원(상·하반기 각 1만원)

[의약품비]

- 지원대상: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만2천원(상·하반기 각 6천원)
- 지원품목: 비상구급약(해열진통제, 소독약, 붕대, 소화제 등)

[직원애사 회환비]

- 지원대상: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1건당 15만원

[장제용품(그릇세트) 지원]

- 지원대상: 임직원/배우자 사망시 임직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400인용까지

[야식식비 지원]

- 야식비: 야간근무자에 대해 1일 1,400원
- 석식비: 근무시간외 2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해 1일 7,000원

※ 홈고객 마케팅단 현장직원(ITE)의 경우

- 내용: 고객센터 서비스 현장의 개통업무에서 개통 A/S 업무 전환
- 시행일: 2011.1.1 ~
- 야간대기
 - 19시 이후 3시간 미만인 경우 30,500원 지급
 - 19시 이후 3시간 초과 6시간 미만인 경우 58,000원 지급
 - 19시 이후 6시간 이상인 경우 58,000원 지급 및 보수규정, 복무관리지침 준수

[국가유공자 위로비]

- 대상: 국가유공 직원
- 지원기준: 1인당 5만원(매년 6월)

[수련관 생활연수 입소여비]

- 지급대상: 결혼기념일(10/20/30년), 장기근속(20/30/40년) 등
- 지원기준: 복지업무 운영 매뉴얼(수련관 운영) 참조

[운동용품 구입비]

- 구입기준: 임직원 1인당 3,000원

[장애인의 날 위로]

- 대상: 장애인
- 지급기준: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장애인의 날(4월 20일) 다과행사

수련관 이용

[시행일자 : 2010.12.1]

제 목	내 용			비 고	
생활입소 이용기간	• 1년 이내 이용 - 생활입소 기념일이 속한 월로부터 1년 - 좌 동, - 2010.12월이 기념일인 직원 부터 적용			이용기회 확대	
휴양시설 이용포인트		구분	내 용		성수기/주말 공평한 이용 기회 제공
			주말	주중	
		성수기	4.0	2.5	
		비수기	2.0	0.2	
		※ 성수기 - 하계 : 하계휴양소 운영기간 (1개월) - 동계 : 12.1~2월말 (대관령, 무주 限)			

● 수련관 6개소

- 위치: 도고수련관(충남아산), 지리산수련관(전남구례), 경주수련관(경북경주),
 대관령수련관(강원횡계), 거제수련관(경남거제), 무주수련관(전북무주)

● 수련관 인터넷 정보: <http://www.cowels.co.kr/>

결혼기념일 및 장기근속자 생활임소

구분	결 혼 기 념 일	장 기 근 속 자
지급 내역	- 결혼기념일 10년, 20년, 30년 - 위로출장 처리 * 교육처리 * 수련관 생활임소 (2박3일) * 본인 및 배우자 여비지급 - 생활임소 신청기한 - 생활임소 기념일이 속한 월로부터 1년	- 장기근속 20년, 30년, 40년 근속 - 위로출장 처리 * 수련관 생활임소 (2박3일) * 본인가족 5인 이내 여비지급 - 축하금 지급 * 20년 : 70만원 * 30년 : 100만원 * 40년 : 150만원 - 공로패 수여 - 생활임소 신청기한 - 기념월 이후 1년

선택근무시간제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1년 단체교섭 협정서(2011.5.27) "제55조(근무시간) 시행"관련, 근무시간의 자율적 선택과 회사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선택근무시간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
근무시간	- 의무근무 시간대 운영: 10:00 ~ 16:00(일 최소5시간 근무) - 근무가능 시간대: 06:00 ~ 20:00(일 최대 9시간 이내 근무) - 1개월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으로 운영(1개월 단위) - 원격근무(자택/스마트워킹) 시에도 동일 적용
시행시기	2011년 9월 1일 ~
신청 및 승인	- 신청은 선택근무 시작 월 7일전 (1개월 단위 운영) - 시·종업시간은 1시간 단위 지정 - 강제시행 또는 사전 신청/승인 없이 선택근무 시행 불가

Q&A

Q1. 선택근무시간제가 뭔가요?

A. 선택적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써 출퇴근 시간을 정해진 범주와 규칙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삼성에서 시행했던 조기출퇴근제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출근, 오후4시 퇴근 이런 것이지요

Q2. 그럼 KT 선택근무시간제의 범주와 규칙은 무엇인가요?

- A.** ① 1개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선택근무시행 **7일전**에 계획서를 e-HRM에서 작성하시어 관리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② 해당월 주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③ 월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8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미달해도 안되며 초과해도 안됩니다.
- ④ 의무시간대(Core time)는 꼭 준수하셔야 하며 의무시간대는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Q3.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월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Q4. 선택근무시간제 신청자가 스마트워킹을 할 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A. 현재 사무실 근무자(오전9시~오후6시)가 스마트워킹 시 근무시간을 그대로 적용 받듯이 선택근무제 적용 근무시간을 스마트워킹 시에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스마트워킹센터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5. 출퇴근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A. 출퇴근은 복무권자가 체크하며 시스템 등에 의한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Q6. 1개월 단위로 계획하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수정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HRM 선택근무메뉴에서 수정사항을 월소정근무시간에 맞게 반영하시고 복무권자에게 승인 받으면 됩니다.

Q7. 갑작스러운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연차휴가, 청원휴가, 병가 등의 유급휴가일의 선택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 해당일의 선택근무시간과의 차이는 남은 일수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Q8. 지각, 조퇴, 외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시업시간으로 선택한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할 경우 지각 처리합니다. 선택근무를 하더라도 외출과 조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일 최소시간(5시간 Core time)은 있는데 최대 근무시간의 제약은 없는 건가요?

A. 선택근무시간제 신청 직원의 피로도와 건강을 고려하여 최대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을 넘지 않게 운영합니다.

Q10. 정상 근무시간제 대비 복지 및 보수 또는 그외 것이 달라지는 것은 있는지요?

A. 보수 및 복리후생기준 등은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합니다.

Q11. 언제부터 실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10월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A. 전산입력은 9.6까지 가능하며, 9월1일 시행이므로 9.7일부터 선택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9.1~9.6일 사이의 근무일은 09:00~18:00시간으로 신청하십시오.

Q12. 1개월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의 운영의 뜻은 무엇인가요?

A. 회사 근무시간은 주5일 40시간입니다. 선택근무에 의하더라도 1개월을 통산하여 회사 근무기준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Q13.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A. 선택근무시간제는 직원의 선택이 우선입니다만, 선택근무시간제로 인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므로 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Q14. 어떠한 경우에 선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선택근무시간제 신청에 따른 선행조건은 없습니다. 자기계발, 육아, 출퇴근편의 등을 위해서도 가능하며 고객Care를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Q15. 18시 이후까지 근무할 경우 저녁 식사시간(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54조). 선택근무제는 일 최장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의 일부를 식사시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상조서비스와 장제용품 지원 프로세스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0 년 단체교섭 협정(2010.10.28) - '상조지원' 과 관련하여 KT 임직원을 위한 상조서비스를 전문 상조법인(다운플랜: KT 노동조합 출자)에서 통합 지원합니다.

■ 다운플랜 장례지원 서비스 안내

- 상 발생시 다운플랜의 전문 장례지도사의 컨설팅을 받으세요
- 상담문의는 1577-1555(ARS "2"), 장례지원서비스 요청 시는 "1" 통화
- 홈페이지: <http://www.daonplan.com/>

■ 컨설팅 받을 내용

- 상 발생 후 종료 시까지 장례 절차에 대한 컨설팅
- 청결하고, 저렴하며 매너 좋은 장례식장 컨설팅
-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음식, 화장, 매장 등에 대한 컨설팅

■ 상 발생시 다운플랜 장례지원 프로세스

- 모든 임직원은 상 발생시 다운플랜으로 연락하시면 ONE-STOP 처리

